

「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」 등 4개 고시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일괄개정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1월 18일
중 소 기 업 청 장

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서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감축을 목적으로 규제의 효력상실형 및 재검토행 일몰제 적용을 규정
-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정기적인 규제 감축·완화 검토를 실시할 계획

2. 주요 내용

- 고시(11건) 일몰제 적용을 위해 일괄개정 추진
- 일몰 방식은 재검토행으로 하고 재검토 기한은 2년으로 설정
- 일괄개정 고시 현황
 -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(3건)
 -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(3건)
 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(1건)
 -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(4건)

3. 의견 제출

○ 「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」 등 고시 일괄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규제영향평가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* 보내실 곳 :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
규제영향평가과(전화 : 042-481-4344, Fax 042-472-3272)

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(안)

발령 2014.11.0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-00호

제1조(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의 개정)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3조(재검토기한) ①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9일까지로 한다.

②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4조2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공시 : 2015년 1월 1일
2. 제18조에 따른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: 2015년 1월 1일
3. 제19조에 따른 등록 취소 : 2015년 1월 1일

제2조(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의 개정)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9조(재검토 기간) ①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: 2015년 1월 1일
2. 제6조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·접수 : 2015년 1월 1일
3. 제2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: 2015년 1월 1일

제3조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개정)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재검토 기한) ①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의 개정)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3조(재검토기한) ①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

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자격 확인 : 2015년 1월 1일
2. 제18조 제4항에 따른 적격조합의 사후관리 : 2015년 1월 1일
3.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의 범위 : 2015년 1월 1일
4. 제31조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: 2015년 1월 1일

부 칙<제2014-00호, 2014. 11. 00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